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2018. 1.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 2017년 성과와 평가	1
II . 2018년 업무추진 여건	4
III . 2018년 업무추진 방향	6
IV . 주요업무 추진계획	9
1. 주요정책	10
1)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10
2)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18
3)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25
4)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31
2. 당면현안	35
V . 공통과제 추진계획	36
1.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정책	36
2. 3만불 시대 원년, 정책전환 과제	40
3.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타협) 과제	43
4. 국민 안전·안심 정책 및 과제	45
5. 근무혁신 추진계획	47
[붙임]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49

I. 2017년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강화

- 주요 지상파 및 종편 등에 엄정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실시하고 방송제작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강화

※ '17.3월 종편·보도 5개사, '17.12월 KBS·MBC 등 지상파 14개사(147개 방송국) 및 종편 1개사(MBN) 등

-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17.10월)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 등을 모색

□ 외주제작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

- 방통위·문체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외주제작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17.9월~)하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17.12월)

-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저작권 배분 및 표준계약서 사용 뿐 아니라, 제작인력의 근로환경 등 외주제작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폭넓게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점검체계를 마련

□ 재난방송 체계 고도화

- 경주지진('16.9.12.), 포항지진('17.11.15.), 북한의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여 긴급 재난시 방송사의 중간 확인과정 배제, 국민 인지율 제고를 위한 경보음 송출 등 관련 고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17.12월)

- 긴급재난(민방위 경보, 지진규모 5.0이상) 발생시 ①중간 확인과정 배제, ②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③경보음 송출, ④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포함

□ 전 국민 미디어 교육을 통한 참여와 소통 확대

- 전국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청소년·노령층·주부·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16년 약 47만명 → '17년 약 53만명)
- KBS 등 방송사를 통해 미디어센터 교육생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방영 대폭 증가('16년 515건 → '17년 892건)

□ 개인·위치정보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

-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지원
-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인 APEC CBPR 가입('17.6월), 위치정보 우수모델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사업자 허가 주기 단축(3개월→2개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수단 확대('17.12월) 등

□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

- 방송·통신시장 분야별로 불공정행위 조사 및 엄정 제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17.9월), 외국인 영업 특혜제공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17.3월, 과징금 총 21.24억) 및 통신서비스 해지 거부·제한행위('17.12월, 과징금 총 9.4억) 등

□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국내외 사업자 협조체계를 확대(39개→51개 사업자)하고, 불법촬영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12,400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적발하는 등 차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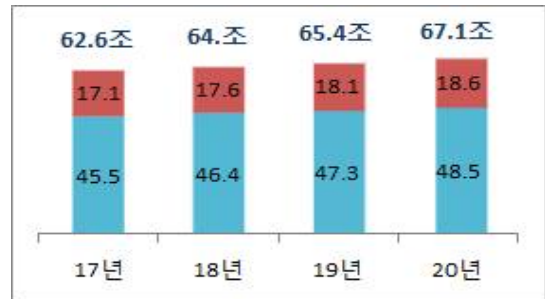
2. 아쉬운 점

- (방송)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오보·막말 등으로 방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한편,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 소비로 전통 매체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은 부족
 - 종편·유료방송PP 활성화 등으로 방송의 외적 다양성은 높아졌으나 콘텐츠 측면의 다양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등을 통한 참여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도 강화 필요
- (통신·인터넷) 그 간 통신비 인하,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노력해 왔으나 복잡·다양해지는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종합 정책 등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중장기적 대응은 미흡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규모 침해 사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정책도 강화 필요
 - 또한, 인터넷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역차별 문제 제기 등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도 미비
- (융합) VOD·OTT·1인 미디어 등 방송통신이 결합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융합 법제도는 여전히 미정립
 - 방송통신 융합이 고도화 될수록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주관하는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더욱 중요하나 효과적 대응이 부족

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시장 환경 : 방송통신시장의 정체와 콘텐츠 제작기반 약화

-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17년 약 62.6조원(방송 16.6조, 통신 45.0조 추정)에서 '20년 약 67.1조원(방송 18.6조, 통신 48.5조)으로 연평균 약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전망 >

- 스마트·모바일 기기 활성화, OTT 신규 동영상서비스 확산, 온라인광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의 경쟁력과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하락
- 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이동통신 등 기존 통신서비스 시장은 포화상태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06.6%, 이동전화 보급률 108.2%('17년말)

- 제작비 상승과 광고시장 침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기반이 약화되고, 최대 한류 시장인 중국·일본의 한한령·혐한류 등으로 한류 성장세도 주춤

※ '16년 기준 한류 방송콘텐츠 지역별 수출액은 중국(36.8%), 일본(23.8%)에 집중

□ 기술 환경 : 방송통신융합의 가속화와 신규서비스 등장

- C-P-N-D-U 모든 계층에서 방통융합이 진전되고 스마트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적 환경 구축
-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IoT·AI·빅데이터 등은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방송사업자의 OTT시장 진출과 통신사업자의 방송서비스 제공, MCN·SNS를 활용한 1인 방송 및 결합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미디어 제작과 소비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방통융합이 고도화

□ 사회 환경 :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 요구 증대

- 새로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직접 참여와 소통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공정성·공공성에 기반한 방송통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유와 책임·다양성을 전제한 사회적 의견과 소통의 기제 마련 필요
 - 방송·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증대로 기존의 수동적인 소자는 능동적 이용자·참여자로 변모
 - 개인이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자기 표현과 사회참여 욕구 확대에 참여형 미디어* 확산
- * SNS, 동영상 공유서비스(네이버, Youtube), 인터넷 개인방송(아프리카TV, 다이아 TV), 팟캐스트 등

□ 이용 환경 : 이용자 보호 영역의 확대

- 모바일 중심의 생활변화, 지능정보사회의 본격화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심화로 복잡하고 새로운 양상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증가
 - 융합서비스의 확산은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불법촬영동영상 및 사이버 폭력·스마트폰 중독 증가 등 인터넷의 역기능도 심화
- 방송통신서비스의 글로벌화로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간편해진 반면, 이용자 피해 시 국내법에 따른 규제가 어려운 문제 발생

Ⅲ.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 ①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본질적 가치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
 - 방송 공공성 구현의 중심매체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의 자율성 제고
 - 방송통신이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내적·외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역방송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방송 활성화를 지원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사이버폭력·불법 음란물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기능 대응에도 집중
- ②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의 정책기조를 소비자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적극적·능동적 이용자로 전환
 - 시청자가 직접 방송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로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
 - 지능정보사회 본격화에 맞추어 새로운 이용자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③ 방송통신이 미래 사회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생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방송사-외주제작사를 비롯한 방송통신업계 전반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甲-乙 관계**를 청산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 고품질 콘텐츠가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한류시장 확대·지원으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
-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꼭 필요한 규제만 실시하고,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규제 역차별 해소 및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등 **차별 없는 규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 조성

④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융합 고도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으로 미래에 대비

- 지상파 UHD방송·다채널방송 등 신규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정비와 함께 안정적 콘텐츠 제작 기반을 조성
- VOD·OTT 등 **융합형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분류체계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 개인정보보호의 법체계 개선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방안 마련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
 - 이와 함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정책** 추진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철저한 이행점검, 방송평가제도 개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오보·막말 제재 강화로 방송의 신뢰성 제고
- 포털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계재자의 반론 기회 법제화
- 불법·유해정보 긴급심의, 새로운 필터링 기술 적용, 사업자 자율협력 확대, 사업자의 음란물 삭제·접속차단 의무화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총 7개 → 8개 센터), 마을 미디어교육(21개 → 50개 마을),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299개 → 333개교) 등 미디어교육 확대
-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및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가격 인하, 주요 앱의 데이터 소모량 측정·공개로 통한 합리적 데이터 소비 유도

□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저작권 등 가이드라인 및 독립창작자 인권 선언문 제정, 외주 근로환경 실태점검으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 공동제작협정을 베트남·태국·캐나다로 확대 추진하고,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 조사 및 자료 공유로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 미래를 대비한 방송통신 신산업 활성화

- 지상파 UHD 방송 확산 및 수신환경 개선,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UHD 방송기술의 우수성 홍보, EBS-2TV 본방송 승인 및 신규 콘텐츠 편성 확대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 기반 마련

Ⅳ.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 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정책 목표	주요 업무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②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③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④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⑤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⑥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⑦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⑧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⑨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⑩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①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 추진 배경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올바른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업무

가. 공영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신장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역할 정립) 미래지향적 공영방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에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분과 및 정책 과제 >

< 1분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2분과 >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 이사회 구성절차 개선 ▪ 사장 선임절차 개선 ▪ 공영방송 운영·평가체계 개선 ▪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 제작·편성 법제도 개선 ▪ 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제정

-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제도 정비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공적 책무 제고방안 마련(12월)
-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제고) 재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
 -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평가 등을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9월)

- 수신료의 면제(방송법 시행령 제44조)·감액(제45조)·가산금(제47조) 등 수신료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12월)

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의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공적채무 조건 등에 대해 **철저한 이행 점검** 실시(연중)
- 종편PP의 방송 품격제고 조건과 지상파방송의 부당 해직·징계 방지, 외주제작 및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등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한 제재조치** 시행
- (방송평가제도 개선) '01년부터 시행된 방송평가제도가 그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면서 사업자간 변별력 부족과 실효성 저하 문제 제기
-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평가 영역·항목·배점의 유의미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자간 변별력 제고 및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방송 제작·편성의 자유 보장) '17년 실시한 편성규약·편성위원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12월)
- ※ 가이드라인에는 편성규약 공표방식·절차, 운영 방식 등 포함
- 편성권 보장 관련 기구 운영시 방송평가 가점부여 등 개선 추진 (방송법 개정 연계)

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향상) 규모 5 이상의 경주 지진('16.9월)과 포항 지진('17.11월) 발생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 최소화, 원활한 피해 복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마련**

- 도로·철도터널 및 지하철 구간에서 라디오·DMB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기술컨설팅 및 예산 지원(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재난유형 및 효과적인 경보음 등 기준을 방송사 자체 매뉴얼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18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 추진
- (오보 제재 등 방송 신뢰성과 품격 제고)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정 제재를 강화하고, 종편PP 재승인 시 부가한 오보·막말·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조건의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
-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확대, 방송제작 관계자 대상 심의규정 및 방송언어가이드라인 등 교육 실시(방심위 협조)
- (공익채널 제도 개선) 공익적 콘텐츠와 채널 다양성을 위한 공익채널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유효기간 1년→2년)을 도모하고, 선정 심사 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3월)
- 선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지원 사업(과기정통부 소관)과의 연계 등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18년도 공익채널 선정 현황 >

분 야	채 널 명
사회 복지(4개)	소상공인방송, 한국직업방송, RTV, 육아방송
과학·문화 진흥(3개)	예술TV Arte,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 지원(3개)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 대한 관심과 협력 유도를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11월)하고,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해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추진(12월)
-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한 방송통신의 정보교류와 미디어 신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담당자간 토론회 개최 및 이를 통한 프로그램 교차 구매와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등 추진

②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 추진 배경

-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써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인구학적 특성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디어 다양성 구현 필요
- 또한, 미디어의 중앙집중화 및 매체 간 경쟁 심화로 지역방송의 위상이 하락하고 재정·인력 등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

< 지역 방송사 현황 >

- 방송사업 매출액 : '12년 6,104억원 → '16년 5,260억원(△844억원, 13.8% 감소)
- 광고수익 : '12년 4,556억원 → '16년 3,361억원(△1,195억원, 26.2% 감소)
- 인 력 : '12년 3,277명 → '16년 2,880명(△397명, 12.1% 감소)

□ 주요 업무

가. 미디어 다양성 증진

-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고정형 TV와 스마트폰·PC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개정안 마련, 12월)
-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미디어다양성 통계 및 연구 결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 서비스 실시(1월)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조사·분석하여 새로운 여론 다양성 측정지표를 제시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제공(1월)
- (지상파 라디오방송 효율화) AM 라디오 청취율 및 전시·재난매체 역할, 표준 FM 활성화 추세 및 해외 디지털라디오 전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상파 라디오 정책 방안 마련(12월)

- 국내 라디오 산업 현실 진단과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연구반 구성·운영(9월)
-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라디오정책 자문기구 설치 추진(11월)

나.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 (콘텐츠 경쟁력 강화) SNS·포털 등 신규매체에 서비스 가능한 전용 콘텐츠 제작 지원 및 해외 판매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등으로 해외 판매·유통 촉진('18년 예산 41억원 편성, 연중)
- PD, 작가, 촬영·편집, 특수촬영 등 분야별 전문교육 및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뉴미디어 대응 교육 강화

< 교육·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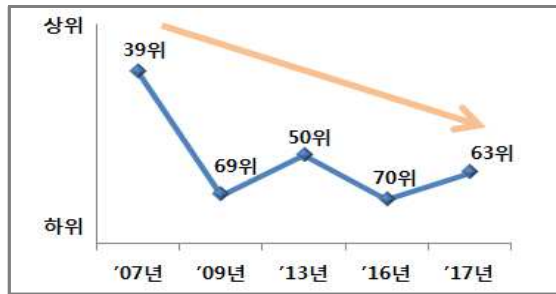
- (지역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지역방송의 독립성 강화 및 투명경영을 위해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를 통해 지역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 감사제도 강화 등 재허가 조건 부가 및 이행실적 점검 실시
- (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 지역민방 경영 악화 등 제작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지역민영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정안 마련(하반기)

* 현재 지역민영방송사에만 자체편성비율(23~31%) 규제 적용

③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세계 언론자유지수 하락 및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포털의 임시조치 증가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 제기



< 세계 언론자유지수 >



< 포털 3사 임시조치 건수 >

- 한편, 인터넷·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인터넷 상 불법도박·마약 등 유해물과 음란물·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국민의 불안 증폭

□ 주요 업무

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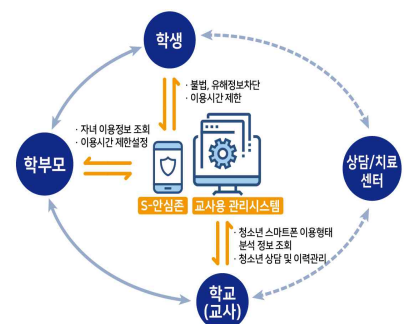
- (임시조치 제도 개선) 포털 등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12월)
 - *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시 포털사업자가 임시로 삭제·차단하는 조치
- (분쟁해결 기구 설치) 임시조치 관련 이의제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중립적·전문적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등 법적근거 마련(하반기),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안) 마련(11월)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나.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인터넷방송 사업자 등에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시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12월)
 - 피해자 요청시 사업자의 선차단 자율규제와 함께 긴급심의를 실시하여 삭제·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3일로 단축
 - 불법영상물의 편집·변형 재유통을 막는 DNA필터링 기술 적용, 방심위-경찰청 간 공조시스템을 구축(10월)하여 효과적으로 삭제·차단
 -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
- *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 페이스북 등 51개사 참여(텀블러 참여 촉구)
- (클린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폭력성 등 폐해에 대응하고자 구성된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통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11월)
 - * 정부부처(방통위, 과기정통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업자(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관련 학회 및 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17.12월)
- (가짜뉴스 확산 방지)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조성
 - 인터넷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신고 활성화, 광고 제한 및 논란(disputed) 표시 부착 등 규제방안 마련(11월)
 -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강화로 국민들의 가짜뉴스 판별능력 제고(연중)

- (청소년 이용환경 개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청소년 스마트폰 상의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안심드림서비스' 개선·확대

※ 사이버안심존 (학교수) : 750개('17년) → 1,100개('18년)
 스마트안심드림 : 38,000개('17년) → 42,000개('18년)



< 사이버안심존서비스 >

- (불법스팸 대응 체계 고도화)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분석 및 탐지·차단 등 차세대 스팸 대응 기법 도입, 웹팩스 스팸까지 간편 신고 기능 확대(12월) 등 스팸 대응 체계 고도화

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

- (전국민 인터넷 윤리교육)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유아·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18년 예산 약 30억원 편성, 연중)
 - 인형극·디지털 교구 활용 교육(유아), 예술체험형 공연교육·교구 활용 교육 및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초·중·고)등 참여형·실천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대상별 인터넷윤리교육’ 추진을 위해 유아·청소년의 멘토링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
 -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신설
-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국민이 직접 인터넷윤리 문화를 확산하는 주체로서 콘텐츠 생산과 체험·참여활동 등 강화(연중)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인터넷 윤리대전,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 및 우수 콘텐츠 발굴·시상
- (인터넷윤리체험관 확대) 광주 인터넷윤리 체험관을 확대·이전(시청자미디어센터→국립 광주과학관)하여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체험 활성화(3월)
-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마련)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의료·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윤리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자·공급자 중심의 윤리기준 마련(9월)

②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④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추진 배경

- 미디어가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나아가 미디어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주요 업무

가.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시청자 참여 확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예산을 늘리고('18년 예산 약 12억원 편성), 편성 사업자 확대 추진
-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역지상파, 공동체 라디오에 예산 지원 비중을 확대
- (시청자 권익보호 내실화) 시청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등 제도 개선안 마련(12월)
-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전국 7개 지역에만 도입된 공동체 라디오의 외형적 확산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 지원
- 공동체라디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간접 지원 방안을 포함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12월)
 - ※ 정규사업 도입시 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경영)을 원칙으로 의결('09.6.10.)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 출력 증강(과기부 협의) 및 허가 유효기간 규제 완화(3년→5년)로 경영 개선

나. 미디어교육 강화

-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지역 간 차별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기존 7개*에서 경기권(남양주)으로 확대(8개)하고,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 구축 추진

* 현재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서울, 울산 7개 지역에서 운영 중

※ 광역권 확대는 해당 지자체,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 마련

-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확대 추진(연중)

*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실시('17년 21개→'18년 50개 마을)
- 교육 수요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를 공유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문화 확산
- * 광주(노인 미디어교육), 강원(시각장애인 교육), 인천(스마트미디어교육) 등
- 방송제작 및 체험시설 등을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나눔 버스' 운영('18년 100회)

-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초·중·고·대학 등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류 등도 다양화(3~12월)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201→230개교), 동아리미디어교육(68→70개교), 대학생 대상 학점인증 교육과정(30→33개교) 확대
- 1인 미디어, VR,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프로그램 실시

다.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 시청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의 상용화('19년 목표)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개선 및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확대 실시(9월)
 - *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방송의 영상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
- '17년 7개사(KBS, JTBC, YTN, TV조선, SKB,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 → '18년 9개사



-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1만 5천대 보급으로 누적보급률 68% 달성('21년까지 100% 보급 목표)
 - ※ 17개 광역지자체에 홍보물 집중 배포(7만부), 온·오프라인 배너 보급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추진
-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자막방송·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의 편성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6년)됨에 따라, 양적목표 뿐 아니라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에도 노력
- 장애인방송이 형식적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화 등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⑤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 추진 배경

- 앱·IoT·AI 등 신기술 등장과 방통융합의 고도화로 방송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도 증가

※ '16년 소비자원 민원 상담현황 : 1위 휴대폰, 2위 이동전화서비스, 5위 초고속 인터넷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행위에 대응 필요

* 가계통신비는 ('12년)152,359원 → ('16년)144,001원으로 감소추세이나 부담완화 요구 계속

□ 주요 업무

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자 보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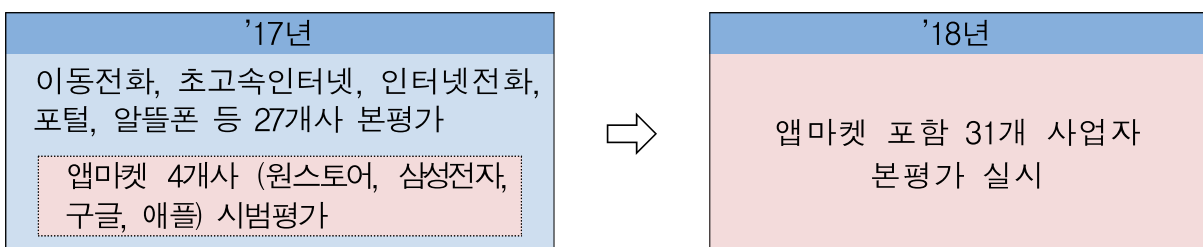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이용자 불편·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기술 인식도, 이용행태 등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12월)

- 규제의 목적·대상·방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학계 등이 참여하는 포럼 구성·운영(3월~)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앱마켓사업자까지 확대 실시

- 평가결과 우수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과징금 부과시 30%이내 감경 가능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 >



나. 피해구제 실질화 및 이용자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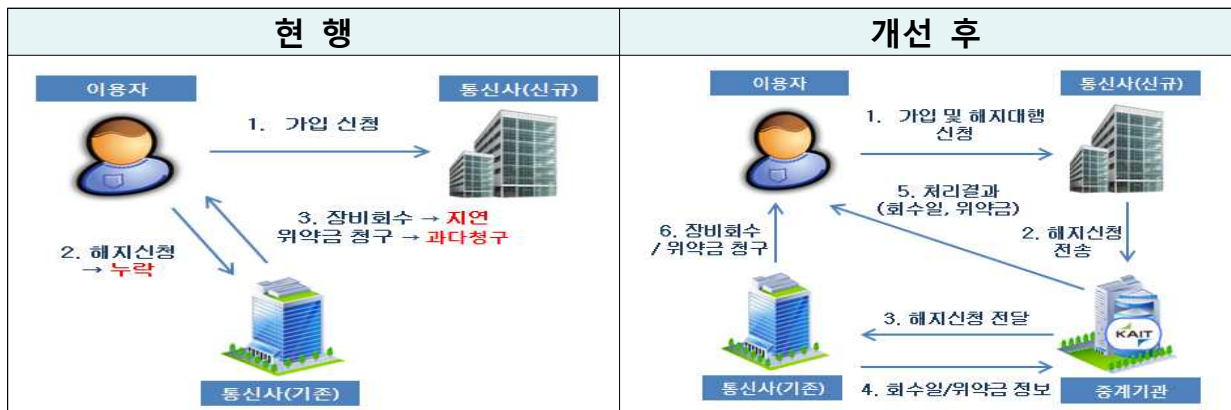
- (분쟁 방지 및 해결 강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알선·재정 제도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 근거 마련(법 개정 지원, 연중)
 - 통신분쟁조정제도 세부 운영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율적 피해구제) 사업자 약관·민원처리지침 등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12월)
- (맞춤형 이용자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별로 특화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교육 및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 실시(연중)

※ 시·청각장애인용 점자책자, 다문화가정용 다국어(한·영·중·일·베) 교육콘텐츠 등 개발

다.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개선

-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 결합상품 해지 시 기존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 마련(10월)

< 원스톱 해지절차 적용 전·후 >



- (인터넷방송 과다 결제 해소) 인터넷방송 이용과정에서의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의 인터넷방송 이용 관련 보호대책 마련(11월)

※ 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 선물 한도액 : 아프리카TV BJ 당 하루 3,000만원/ 유튜브 하루 50만원/ 카카오TV 한달 2,000만원 / 그 외 방송은 규정 없음

-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계약 시 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중요사항 고지 강화, 약정할인 만료자 고지 확대 여부 및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사항 등 이행여부 점검(3월~)
- (이용자 차별행위 개선)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이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유형별로 집중 점검하고 제도 개선 추진
 - 결합판매 시 특정상품에 대한 과도한 할인·특정 이용자에 대한 경품 과다 제공 및 동등결합 판매과정에서 차별행위 점검(7월~)
 - 통신상품 경품 등 허용범위 및 규제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자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안)」 마련·시행(7월~)
- (모바일·인터넷 불편사항 개선) 모바일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시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 인터넷 정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 등의 삭제를 제한하는 이용자 불편행위 근절(7월~)
 - 미성년 자녀의 정보이용료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개시(2월~)

라.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여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 유도(6월)

도입 前 지원금 공시	⇒	도입 後 지원금 공시
이통사 재원		이통사 재원
제조사 재원		제조사 재원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없음		이통사 재원·제조사 재원 구분 공시

- 국회 계류중인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분리공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7.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재도입 추진
 - ※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6개 의원발의 법안 국회 계류 중
-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18년부터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5월)
 -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
 - ※ 통신 관련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 등)를 통해 출고가 공시
-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 보완
 - 공시지원금 변동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공시주기(7일)를 조정
 - 이통사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강요행위 등 단속 강화(연중)
 -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별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12월)
- (무선데이터 사용량 공개) 이동전화의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급증 ('13년 87만TB→'16년 274만TB)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합리적 데이터 사용 환경을 제공하여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
 - 국민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정보제공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공개(9·12월)
 - ※ 측정 대상 앱 선정시 랭키닷컴, 구글플레이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 활용

③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⑥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 추진 배경

- 시장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경쟁심화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경쟁행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乙 관계 발생

* 방송사 - 외주제작사, 홈쇼핑 - 납품업체, 통신사·포털-중소CP, 통신사-유통점 등

- '17년 독립PD의 해외 촬영 중 사망과 드라마 스태프의 추락사고 등 외주제작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며, 공정한 방송통신 거래환경 및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엄격한 사후규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주요 업무

가. 방송서비스 분야

- (외주제작 종합대책 시행) '17.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 (방송사-외주사간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를 준수하도록 MBC, KBS, SBS, MBN에 조건 부과('17년)
- (인권선언문 제정) 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 (금지행위 조항 신설) 방송사-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 지원
- (외주제작현장 실태점검) 문체부, 고용부 등과 함께 5개 부처 합동 근로환경 실태점검 실시 및 부처별 대책 이행여부 집중 점검

- (홈쇼핑시장 불공정거래 개선)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 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엄중 조사·제재하고, 영상제작비 대신 판매수수료율을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 차단(과기정통부 협조)

※ '17. 9월 홈쇼핑사의 사전영상제작비 부당 전가 등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

- (채널 및 프로그램 거래 개선) 유료방송사의 중소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채널 제공거부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 추진

나. 통신서비스 분야

- (인터넷분야 상생·발전 협의체 운영)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운영(2월~)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1주제 :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방안	2주제 :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보호
①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확보	① 망중립성·제로레이팅 제도
② 국내·외 망이용료 대가 합리화	② 사후규제체계 합리화 방안
③ 부가통신사업자 규제개선	③ 중소CP·제작자 지원방안

※ 국내·외 인터넷기업, 통신사, 콘텐츠 제공업체, 소비자 관련 단체, 학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

- (인터넷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포털·SNS 등 플랫폼 시장 급성장으로 증대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CP 간 불공정거래 개선 추진
 - 이용자·사업자 대상 불편·불공정행위 면접조사 및 시장현황 파악(3월~)
 - 인터넷플랫폼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실시(5월~)
- (사업자간 도매제공 부당행위 점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간 도매대가 산정 및 협정 체결 등에서 특수관계인(자회사)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실태점검 강화(11월~)

다. 결합서비스 분야

- (결합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합판매를 통한 불공정 경쟁 방지 및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결합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
 - 방송통신 결합판매와 개별 상품시장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경쟁 상황 평가 실시(매년 1월)

⑦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불합리한 방송광고 규제 정비, 광고판매 및 협찬제도 합리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고품질 방송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자원 확보 필요

< 매체별 광고매출액 점유율 변화 ('98년 → '16년) >

지상파	인쇄	옥외 등 기타	유료방송	인터넷	모바일
34%→16%	42%→19%	20%→14%	3%→15%	2%→19%	0%→17%

- 그동안 한류가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았으나, 특정국가 집중에 따른 한계 등으로 한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작·수출 환경을 개선할 필요

□ 주요 업무

가. 방송광고제도 합리화

- (방송광고 제도개선) 광고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건의(안) 등을 반영하여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12월)

* 방송광고 제도개선 효과분석 결과, 시청자 인식조사 및 광고주 설문조사 내용 등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정비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사, 신문 등 타매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 (모니터링 강화)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추진
 -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시청권 침해가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기획·집중 모니터링 지속 실시(연간 4회)
- (협찬제도 개선)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제도 개선(안) 마련(12월)

- 협찬을 사적 자치에 맡겨온 입법 연혁과 협찬 의존도가 높은 제작 현실을 고려하여 **협찬의 기본원칙, 필수적인 금지의무 중심 규정**
※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등 국회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 병행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영업의 자유를 고려하여 **민영 미디어렐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안) 마련(12월)

나. 한류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지원

- **(공동제작협정 체결)** 정부간 공동제작협정 등을 통해 콘텐츠 수출장벽을 낮추고, 중국·동남아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
 - 한한령 등으로 중단되었던 중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 재개
 - 베트남(MIC)·태국(NBTC) 등 동남아 주요국 및 캐나다(MCH)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추진
- **(해외 방송콘텐츠 시장 조사)**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 진출 대상국의 방송콘텐츠 시장과 규제 현황, 구매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업계와 공유
- **(국제 행사 개최)**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국제 방송콘텐츠 마켓 참가·지원 등을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 교류협력 강화
- **(국제방송 효율화)**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증진 및 친밀감 조성 등을 위해 **국제방송(KBS월드, 아리랑TV)의 효율적 운영** 추진
 - 재원 확보의 안정성, 콘텐츠 제작 능력 제고 등을 위한 방안 마련(12월)

< 국제방송 현황 >

구 분	KBS				국제방송교류재단
	KBS월드TV	KBS월드24(TV)	KBS월드라디오	한민족방송(라)	아리랑TV
시청대상	해외교민 현지 외국인	해외교민	해외교민	해외교민	외국인
채널편성	드라마·예능 위주	뉴스·교양 위주	종합 편성	종합 편성	종합 편성
방송언어	한국어 (외국어 자막)	한국어	영어 등 11개국어	한국어	영어 (외국어 자막)

⑧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 추진 배경

-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플랫폼 간 차별성이 약화되는 등 융합시대에 맞는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균형적 규제 해소 필요
- 특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 해소,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완화 등 유사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차별 없는 규제 요구 증대

< 국내·외 기업 규제 역차별 관련 주요 사례 >

① 망 사용료 역차별	▶ 통신사는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사용료를 부과하나, 일부 해외기업에는 미부과
② 조세 회피	▶ 법인세는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에만 부과하여, 앱마켓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기업은 조세 회피
③ 음란 정보 규제	▶ 동영상 등은 해외사업자 서비스 비율이 높으나 규제 집행이 어려움
④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0시~6시 청소년 게임제공 금지)	▶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만 적용

□ 주요 업무

가. 국내·외 사업자 규제 역차별 해소

- (해외사이트 불법정보 등 유통 차단) 해외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및 차단·삭제 추진(연중)
 -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국제조약 가입 및 해외 정부와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 해외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중국·미국 등 현지 인터넷 유관기관과 협력
- ※ 한-중 인터넷협력센터('13.1월~) 역할 확대 및 한-미 인터넷협력센터 구축 방안 검토
- (해외기업 불공정행위 등 조사·제재 강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조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집행력 강화(연중)

- 해외CP-국내ISP 간 망사용료 분쟁, 해외 플랫폼사업자의 국내CP 부당 차별행위, 일방적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행위 등 집중 점검
 - 주요 해외기업의 국내 연락체계 확보 및 정례적인 정책 소개 활동 강화
 - (위치정보서비스 주체 불일치 해소) 외국기업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직접 허가·신고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신청서식 개정
 - 위치정보법에 EU GDPR(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검토(10월)
- * 유럽연합 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정보처리자, 수탁처리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

나.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

-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종편이 매출이나 시청률 등에서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

< 지상파·종편 매출 및 시청 점유율 변화 >

구 분	지상파	종편 PP
광고매출 점유율 ('11년→'16년)	67.2% → 54.8% ()	1.7% → 11.1% ()
시청 점유율 ('11년→'16년)	61.9% → 55.0% ()	1.4% → 15.0% ()

- (외주제작 편성의무)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중인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를 종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편성의무 부과 추진
 - (의무송출 제도)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매체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기정통부와 협의, ~12월)
 - (기금 부과) 지상파와 종편의 기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12월)
- ※ '17년 : 지상파(구간별 차등징수율, 0.5~4.3%), 종편·보도PP(별도 동일징수율, 1%)
- (통합방송법 제정)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하여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하는 등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규제 틀 마련(법개정 지원, 연중) 및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 추진

4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⑨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 추진 배경

- UHD, MMS(다채널방송)* 등 신규 방송서비스는 채널 선택권 확대 및 선명한 화질 등 시청자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새로운 융합형 미디어서비스(VOD, OTT 등)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규제체계로는 이용자 보호 및 국내사업자의 경쟁력 기반마련에 어려움

- 유료방송 VOD 매출액 : '12년 2,986억 → '15년 6,380억
- OTT서비스 매출액 : '13년 1,490억원 → '16년 4,884억원
- VOD광고 매출액 : '11년 143억원 → '15년 965억원

□ 주요 업무

가.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 및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UHD 생중계) '17년 말 광역권·평창으로 확대한 지상파 UHD방송을 활용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종목을 생중계(2월)
※ '21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27년에 HD 방송 종료 및 UHD 전환 예정
- (안정적 콘텐츠 확보)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18년 10%)과 콘텐츠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지속 점검
- (UHD 수신환경 개선)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수신환경 조사 결과('17.11월)를 바탕으로 UHD 수신환경 개선 추진(연중)
 - 과기정통부와 함께 미국방식 UHD TV 및 셋톱박스 보급방안을 논의하여 지상파 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양방향 서비스 활성화/이동형 HD방송 검토) ATSC 3.0 표준으로 개발되는 IP기반 양방향 서비스 등 UHD 부가서비스 활성화 지원

- 수도권 및 강원 지역에 한시적('18.1~5월)으로 이동형 HD방송 시범 서비스를 허용하여 국내 방송기술을 홍보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

나. MMS 본방송 도입 및 콘텐츠 활성화

- (MMS 본방송 도입) EBS-2TV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전환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입법과 하위 법령 개정 추진(연중)
 - MMS의 법적지위, 도입대상사업자, 승인절차, 편성기준 등 관련 제도 정비 후 EBS-2TV 본방송 승인을 추진
- (콘텐츠 활성화 지원) EBS-2TV 제작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편성 비율을 높여 본방송에 대비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여건 마련
 - ※ '18년 프로그램제작지원 50억원 편성, 신규 편성비율 '17년 9%→'19년 15% 이상 목표
- EBS-2TV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형 과학교육 콘텐츠 등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공익적 콘텐츠 제공으로 타채널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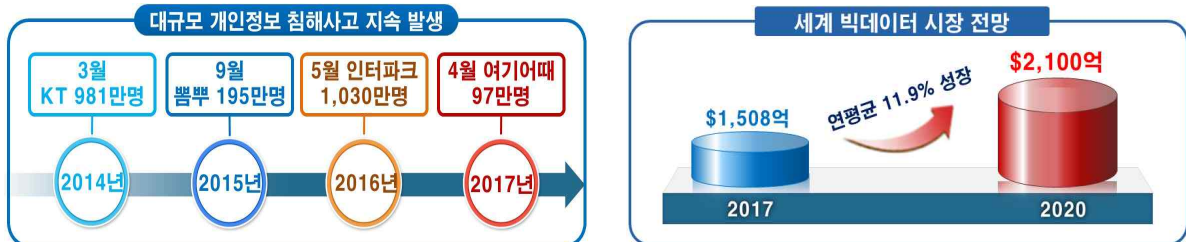
다. 신유형 융합서비스 제도 정비

- (유료방송 VOD 제도 개선)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에 VOD 포함 여부 불명확으로 콘텐츠 공급 분쟁 등에 적극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유료방송 VOD의 법적지위 등 제도 개선 추진(방송법 개정안 마련, 12월)
-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EU·프랑스 등 해외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및 유해콘텐츠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12월)
 - * 티빙, 폭, 옥수수, 올레TV, U+비디오포털,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
- (신유형 광고 제도화) 트리거 광고*, VOD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정비 추진(제도화 방안 마련, 12월)
 - * 화면에 작은 광고창을 띄워 리모컨을 누르면 해당 메뉴로 연결되도록 유인하는 광고

⑩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 추진 배경

- 개인·위치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조화 필요



□ 주요 업무

가.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 강화

- (동의제도 실질화)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사전동의 예외로 하고, 동의 획득 방법으로 모바일 앱·SNS 등을 추가하여 이용자와 사업자의 편의 도모(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12월)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이용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 열람·제공 요구, 이용내역 통지, 동의 철회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 (취약분야 점검 강화) 온라인 맞춤형 광고사업자, O2O 및 신생 인기 앱 등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수시 기획점검 실시(연중)
※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 관련 정부합동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 점검 강화
-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및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11월)
 - 사업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 검토
 - 시정명령 불이행 및 검사 회피 등의 이유로 법 집행이 불가능한 웹/앱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으로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
 -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매출액 기반 과징금' 또는 '정액 과징금' 중 높은 금액을 부과

-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내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웹/앱 서비스 및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점검 강화(연중)
 - 해외 사업자의 우리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가 확산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관·제출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6월)

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비식별 조치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비식별조치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
 - 중소기업도 안전한 비식별 조치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추진(연중)
- **(데이터기반 신산업 활성화)**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의 단계적인 진입 규제 완화 방안 마련(11월)
- **(국제협력 강화)** APEC CBPR* ('17.6월 가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유럽 시장 진출 지원

*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적정)하다고 평가되면 해당국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다. 자율규제 촉진

- **(자율규제 기반구축)**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사업자의 자율점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법제도를 개선(6월)하고, 자율규제 시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2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교육 강화)** 어린이·청소년·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기업의 CPO·실무자 대상 교육 강화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① 평창 동계올림픽 UHD 중계 기반 마련

□ 개요 및 현황

-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개최 지역에 안정적인 지상파 UHD 수신 여건을 조성
- 지상파방송 3사는 올림픽 주관방송사인 OBS(Olympic Broadcasting Services)와 협의하여 올림픽 10개 종목을 UHD로 중계하기로 결정하고, 제작 계획에 맞추어 UHD 중계를 준비하고 있음

※ 지상파3사 UHD 중계종목 : 컬링(KBS), 아이스하키(MBC), 스피드스케이팅(SBS)
나머지 7개 UHD 중계 종목은 지상파방송사와 OBS가 협력하여 공동 진행 예정

□ 쟁 점

- 평창 지역 지상파 수신환경을 조사('17.8월)한 결과, 올림픽 주경기장·미디어센터 등 올림픽 주요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 UHD 수신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 평창·강릉 지역의 UHD 수신환경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한 태기산, 패방산 송신소 외에 대관령 보조국을 추가 운영('18.1월말~)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UHD 수신환경 및 중계 준비현황을 점검·보완하여, UHD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개막일)
- 세계 최초의 지상파 UHD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방송사·조직위와 협력하여 주경기장·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에 UHD TV를 배치하고 이동형 HD TV 체험버스 운영
- 주간 방송사와 후원사가 지상파 UHD 홍보를 강화하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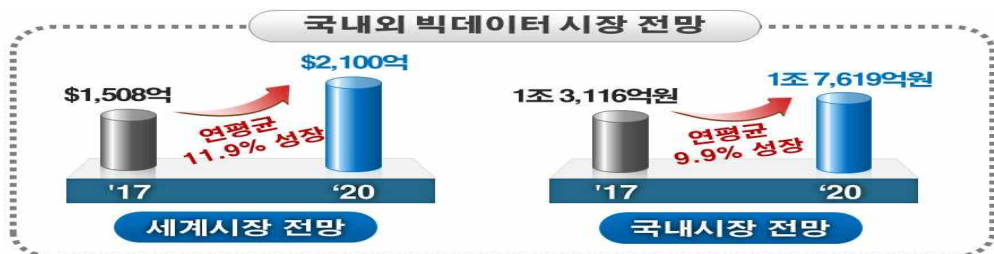
V. 공통과제 추진계획

1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정책

①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 추진 배경

- 데이터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핵심자원으로서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이 중요
 - 시장 환경 변화,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아울러, FTA 체결, 국가 간 디지털 거래 확대, 클라우드 활성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 급증으로 개인정보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 IDC(2017.4.17.) 발표자료

□ 주요 내용

-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삭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비식별 조치'된 정보의 활용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 비식별 조치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 지원
- ※ 4차 산업혁명위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논의 예정(2월 초)
- 중소기업자도 안전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위치정보 규제 개선) 법 제정 시점에 전제가 되었던 기술적·사업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진입 규제, 위치정보 정의 등 재검토 추진**
 - 위치정보사업의 단계적 **진입규제(허가신고) 완화, 사물위치정보·비식별 위치정보의 위치정보 정의 제외**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촉진
-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 가입('17.6월)**에 따라 기업 설명, 운영 체계 구축 등 **국내 운영을 준비**하고, **국제 회원국간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 **EU 적정성 평가*** 조기 승인을 통해 **국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및 유럽 시장 진출 지원**
 -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적정)하다고 평가되면 해당국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 EU 집행위와 '18년 내 '적정성 평가' 추진을 약속하는 공동성명 발표('17.11.20)
- (개인정보 인증 제도 개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중복운영에 따른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통합 추진**
 -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 ('17.12월)하였고 **통합 고시 제정**을 통해 **통합인증 시행** 추진
 - ※ PIMS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적정성을 86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인증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 ISMS : 정보보호 관리과정, 보안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의 적정성을 104개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인증하는 제도(정보통신망법)

□ 향후 계획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사회적 합의 도출 지원 : 연중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18년 하반기
- PIMS - ISMS 통합 고시 마련 및 시행 : '18년 상반기

2 외주제작 일자리 환경 개선

□ 추진배경

- '17.7월 독립PD의 사망으로 외주시장 불공정거래 및 열악한 제작여건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증대
 - ※ VIP,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지시('17.8.22.)

□ 주요내용

- (외주제작 종합대책 시행) '17.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 (방송사-외주사간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사-외주사간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 ※ 가이드라인 제정 시 이를 준수하도록 MBC, KBS, SBS, MBN에 조건 부과('17년도)
 - (인권선언문 제정) 문체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 (금지행위 조항 신설) 방송사-외주사 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 지원
- (외주제작현장 실태점검) 문체부, 고용부 등과 함께 5개 부처 합동 근로환경 환경 실태점검 실시 및 부처별 대책 이행여부 집중 점검

□ 기대효과

- 방송 제작인력의 안전대책 강화, 인권보호 등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외주제작시장 일자리('15년 500여개사, 7천여명)의 질적 수준 제고

3 방송통신 신산업 활성화 규제 개혁 추진

□ 추진 배경

-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개선을 통해 국민편익 및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

□ 주요내용

-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규제혁신)** 방송통신 신산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혁파를 중점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
 - * ①중복소지가 높은 개인정보 관련 인증제도 통합 ②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동의획득 방법 다양화 ③가상광고 세부기준 마련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등 차별없는 규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조성
 - * ①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 도입 추진 등 국내법 준수환경 마련 ②종편PP 관련 의무송출 개선 및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 도입 등
- **(국민불편·민생부담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행정조사 정비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중소방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정비 추진
 - * ①이동전화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②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외주제작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 ③방송분쟁해결을 위한 직권조정절차 마련 등
- **(총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총괄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규제 분야별 네거티브化 방안 마련

□ 향후 계획

-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 연중
- 규제 분야별 네거티브化 방안 마련 : '18. 11월

①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추진 배경

- 미디어가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미디어 격차가 경제적 격차까지 이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시청자 참여 확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사업자 확대를 추진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 (맞춤형 미디어교육) 청소년·노인·주부·장애인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확대 추진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실시('17년 21개→'18년 50개 마을)
-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초·중·고·대학 등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류 등도 다양화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201→230개교), 동아리미디어교육(68→70개교), 대학생 대상 학점인증 교육과정(30→33개교) 확대하고, 1인 미디어, VR,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미디어 프로그램 실시

□ 향후 계획

- 시청자 참여 확대 제도개선 : ~'18. 12월
- 맞춤형 미디어교육 운영 및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 : 연중

②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확대

□ 추진 배경

- 명예훼손·사생활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이 급증하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2017년, 표현의 자유를 가늠하는 세계적 척도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가 63위로 낮은 평가를 기록

- (’07년) 39위 → (’09년) 69위 → (’13년) 50위 → (’16년) 70위 → (’17년) 63위

□ 주요 내용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임시조치 대상 제한 및 기간 단축, 이의제기 절차 신설, 이의제기 시 임시조치 해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는 개선안* 마련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18.12월)

* 정보통신망법 개정 정부안(’16.6.29.)과 유승희 의원안(’16.8.9.)의 수정 대안

- **(통신심의 제도 개선)** 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통신 심의규정 개정 추진(’18.상반기)

- 통신심의 前 통신특별위원회가 정치적 표현 유무 및 심의타당성 검토 할 수 있도록 방심위 특별위원회 규칙 개정

- **(자율규제 기반조성)**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및 시책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18.12월)

- 자율규제기구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등 가이드라인 제정·시행(’19년)

□ 향후 계획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자율규제 기반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18. 하반기

3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 추진배경

- 방송 소외계층인 시·청각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주요내용

- (스마트 수어방송)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의 상용화('19년 목표)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개선 및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확대 실시

*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방송의 영상 크기·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

- '17년 7개사(KBS, JTBC, YTN, TV조선, SKB, KT스카이라이프, CJ헬로) → '18년 9개사

-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10만명)에 대한 방송수신기 1만 5천대 보급으로 누적보급률 68% 달성

※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 '12년 15.5% → '16년 45.8% → '18년 68% → '21년 100%(목표)

-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자막방송·수어방송 등 장애인방송의 편성 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6년)됨에 따라, 양적목표 뿐 아니라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에도 노력

- 장애인방송이 형식적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시청시간대 편성 의무화 등을 반영한 고시 개정 추진

□ 향후계획

- 시청각 장애인용 TV 신청·홍보·접수 및 보급 : '18. 4 ~ 12월
- 스마트 수어방송 시범방송 : '18. 9월
-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를 위한 고시 개정(안) 마련 : '18. 10월

①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콘텐츠 지속 제작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 등으로 인한 방송광고 시장 침체, 제작비 급증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 악화 등에 따라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방송콘텐츠 지속 제작 재원 확충 필요
 - ※ 매체광고 매출액 : 지상파 '11년 23조→'17년 1.4조, 인터넷 '11년 1.9조→'17년 3.8조(추정)
- 반면, 중간광고 등 제도 개선 시 시청자의 시청흐름 저해, 유료방송 등 타매체 광고 축소 우려 등으로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존재

□ 주요 내용

-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송광고제도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방송사, 신문 등 타매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광고제도 개선 정책연구* 결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 건의(안) 등을 반영
 - * 방송광고 제도개선 효과분석 결과, 시청자 인식조사 및 광고주 설문조사 내용 등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규제 정비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모니터링 강화)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위반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 추진
 -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시청권 침해가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기획·집중 모니터링 지속 실시('18년 4회)

□ 향후 계획

- 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 : '18. 하반기

2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품격 높은 공영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 추진

< 최근 5년 간 공영방송 수신료 수입(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 >

(단위 : 억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KBS	5,851(37%)	5,961(40%)	6,080(41%)	6,258(40%)	6,333(43%)
EBS	164(6.4%)	167(6.1%)	170(6.1%)	175(6.5)	177(6.8%)

- 수신료를 산정·배분·검증하는 절차 및 개선방안 관련 국회, 시청자, KBS, EBS 한국전력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존재

□ 주요 내용

- (법제도 개선)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징수·배분·평가 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

※ 독일의 경우,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영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

< 독일 KEF 역할 및 구성 >

- (역할) 독일 공영방송 예산상황과 경영상태를 근거로 재정수요를 심사하여 적정 수신료액 산정, 방송재원 사용내역 심의 등
 - *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료 조정안 산정
- (구성) 연방 16개 주에서 각 1명씩 파견한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시행령 개정) 수신료의 면제(방송법 시행령 제44조)·감액(제45조)·가산금(제47조) 등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18. 상반기
-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 '18. 하반기

1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 확립

□ 추진 배경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

□ 주요 내용

- (매뉴얼 정비)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재난유형 구체화 및 경보음 등 효과적인 기준을 방송사 자체 매뉴얼에 적용하도록 개정을 유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18년 하반기)

- 지진 등 긴박한 재난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재난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강화

<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내용 >

- 긴급재난(민방위 경보, 지진규모 5.0이상)발생시 ①중간확인과정 배제, ②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 ③경보음 송출, ④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포함

- (수신환경 개선) 도로·철도터널 및 지하철 구간에서 라디오·DMB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기술컨설팅 및 예산 지원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 재난방송 라디오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불량 및 수신불가 터널에 대하여 불량 요인 및 유지보수 방안 등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

※ 수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방발법 개정 추진(박광온 의원 개정안 발의, '17.7.10.)

□ 향후계획

-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송사 매뉴얼 개정 유도 : ~'18년 말

2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 차단

□ 개 요

- 디지털성범죄 불법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유통 차단 필요
 - 인터넷 상의 음란, 폭력, 차별·비하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통해 특히,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불법영상물 신속한 차단·삭제
 - 불법유해정보 3대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신팀의 강화
 - * ① 사이트 운영자·광고업자 ② 웹하드·헤비업로더 ③ 음란 인터넷방송 업자
 -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점검 강화(연 2회→4회)
 - 피해자 요청 시, 사업자의 선차단 자율규제 및 방심위의 긴급심의 실시
 - 불법영상물의 삭제 등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확대
 - * 텀블러, 아마존닷컴 등 국내 이용자층이 많은 해외사업자와의 협력 추진
- 음란물 유통 차단수단 제공 등 기술적 조치
 - 방심위-경찰청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핫라인) 구축 추진
 - 불법영상물의 편집·변형 재유통을 차단하는 DNA필터링 기술적용
- 법·제도 정비
 - 음란물 유통 차단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정부안'16.12.6 제출)
 -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차단·삭제하는 FAST TRACK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 향후 계획

- 방심위-경찰청간 불법공조시스템 구축 : '18. 상반기
- DNA 필터링DB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용 : '18. 12월
- 정보통신망법(Fast Track), 전기통신사업법(차단의무 부과) 개정 : '18. 12월

- (조직문화 개선) 탈권위주의 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방통위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마련·추진

< 방통위 근무혁신 10대 제안 >

- ▲ 국화·행사 등 대가·의전 간소화 ▲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똑똑한 보고 ▲ 똑똑한 회의
- ▲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 연가사용 활성화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 건전한 회식문화 ▲ 명확한 업무지시 ▲ 업무집중도 향상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불필요한 보고 및 회의를 최소화하고, 주요사항이 아닌 경우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 조직 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초과근무 감축 및 유연근무제 의무화

- 2018년 초과근무 감축 목표는 추진실적*을 고려, 전년대비 10% 감축

* '15년 19시간 → '16년 14시간 → '17년 12시간으로 최근 3년간 37% 감축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

- 권장 연가일수는 14일로 확대('17년 13일), 연가보상 지급일수에서 제외

- (조직역량·소통 강화) 직원별(재직자·신규자·전입자)로 필요한 교육을 개발·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등 소통확대

- 직원 워크숍(월1회), 창의역량 향상교육(연1~2회) 등에 직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업무역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적 재교육 실시

-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선배 공무원들에 의한 생생한 직무교육 강화 및 멘토링 제도 실시
- 법령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15일 이내 위원회 회의록·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

※ 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6.20) ⇒ 위원회 의결(8.13) ⇒ 법제처 통과 및 차관회의 상정(9.15)

- ‘국민제안을 쉽게 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월간 웹진으로 제작하여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을 강화
- 영상회의를 활용한 내부 정책공유채널 운영 및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시행

□ (국민중심 업무프로세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민중심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재설계

- 국민숙의제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공개토론, 공론화위원회 등)

※ 국민숙의: 국민들이 국가 권력의 구성이나 행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을 전제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열린 토론에 참여하고, 그 결과 도출되는 결론이 국가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안전에 대해 국민의견반영서(시민단체 포함)를 제출(상반기 시범실시 후 확대시행)
- 주요정책의 입안·집행·환류 전단계에 국민·전문가·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정책고객 대표자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 및 정책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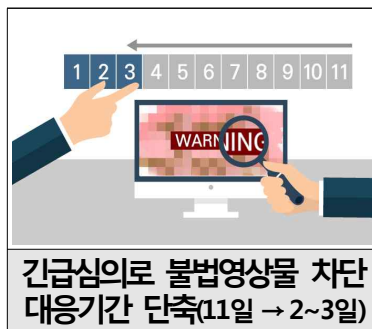
① 신뢰받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오보·막말 방송 제재, 포털의 일방적 임시 조치에 대한 반론기회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미디어 신뢰성 제고



②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 음란물 유통 인지 시 사업자의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불법영상물 긴급심의 및 DNA 필터링 기술로 불법·유해정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불안 경감



③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및 주요 앱 데이터 소모량 공개 등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④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 환경 조성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사전동의 실질화, CBPR 운영 및 EU 적정성평가를 통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물위치정보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환경 조성



집단소송제도로 이용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



우리기업 데이터 활용 및 유럽시장 진출 지원



사물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진입 활성화

⑤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UHD 중계

- 평창올림픽 UHD 중계 준비현황 점검 및 보조국 추가 운영, 주요시설 UHD TV 배치 등 철저한 준비로 실감나는 UHD 올림픽 중계방송 제공



올림픽 UHD 준비현황 점검 등으로 안정적인 중계여건 조성



주요시설 UHD TV 배치로 생생한 현장 중계방송 제공

⑥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계서비스 제공

- '미디어 통계정보시스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분석시스템' 개설로 다양한 방송 통계와 국내외 시청자 반응을 제공하여 사업자·연구자·시청자 편의 도모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송통계 제공



국내외 시청자 반응 제공으로 한류콘텐츠 수출 지원